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067

발의연월일: 2022. 4. 4.

발 의 자: 김두관·김경만·김용민

김정호 · 송재호 · 신정훈

어기구 • 이타희 • 이학영

전용기 · 최기상 · 황운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. 이에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.

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 개 시·군·구 중 '소멸 고위험'지역이 36곳에 달했고, 이는 전년 대비 50%가량 늘어난 결과임.

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 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 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.

이에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7 조). 법률 제 호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 중 "서울특별시에"를 "대한민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무소) 한국은행은 주된	제7조(사무소)
사무소를 <u>서울특별시에</u> 두며,	<u>대한민국에</u>
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	
때에는 정관(定款)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지사무소(支事務所)	
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.	